

신문사 사람들

언론중재위원회 NEWS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은빛 역새가
흔들릴 때마다
가을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
보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바람처럼
언론중재위원회도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책 읽어 주는 할아버지 **박찬일** 어르신(79세)

구수한 옛날이야기로 마음을 나눕니다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박찬일 어르신은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호랑이 할아버지로 불립니다.
어르신은 2004년부터 '호랑이담뱃대' 동아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구수하게 풀어내는 옛날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신 어르신의 따뜻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 of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6 November Vol.197

04 인터뷰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06 미디어트렌드

디지털 시대의 뉴스 저작권 침해

07 언론중재위원회 NOW

2016 부산토론회

08 문화토픽

바그너의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

09 세상읽기

관용

10 언중노트

구제일까 규제일까

11 언론법 이모저모

명예훼손죄를 위한 변호

12 여행수첩

필라델피아 보스턴 여행

14 위원회 NEWS

15 조정중재 사례 / 책 리뷰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더에이치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미래를 위해 다시 던지는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7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1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
2012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판사님 또 올게요”
밝게 인사하며 집무실을 나서는
아이들과 마주쳤다.
지난주에 재판을 받은
아이들이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청소년’이라 불리며
세상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갇혀 지냈던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게 한
‘천종호 마법’을 또 한번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소년법들의 대부’라는 별명이 붙은
천종호 부장판사를 만나
조금은 낯선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천종호 판사님 하면 ‘소년법들의 대부’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언제부터 소년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A. 어릴 적 가정형편이 어려웠어요. 7남매 중 혼자 대학을 나왔을 정도예요. 그래서 소년법정에 오는 아이들의 환경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2010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눈으로 직접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Q.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소년법들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A. 현재 소년법 아이들이 인권침해 수준에 놓여있어요. 단적인 예로 소년분류심사원의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 범죄자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머무는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심사원이 전국에 딱 한 곳, 안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소년원의 한 귀퉁이를 빌려 쓰는데, 그것마저도 7개뿐입니다. 예를 들어 통영에 사는 아이가 심사원에 있다면 가족들은 30분 면회를 하려고 네 시간을 달려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년원 아이들의 한 끼 식사비용이 얼마일까요? 1,650원입니다. 간식비도 없어 아이들이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면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을 굶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저는 호화로운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학생 아이들 수준의 식비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소년법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A.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아이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품행 교정은 상담을 통해 아이들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어루만져줌으로써 가능한데, 환경 조정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낮에 받은 상담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품행 교정보다 환경 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 해 동안 대략 10만 명의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데, 소년원이나 격리시설로 가는 아이들은 5천 명뿐, 나머지 9만 5천 명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9만 5천 명 중 6만 명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이 6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Q. 소년범 아이들의 처우개선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우리가 흔히 ‘비행청소년’이란 말을 쓰는데, ‘비행’과 ‘청소년’, 두 단어의 결합이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혐오 감정을 가지고,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소년원을 예로 들면, 얇은 장판 하나 깔아놓은 11평짜리 방에서 16명의 아이들이 생활해요. 화장실도 다 들여다보이고 방에는 CCTV가 돌아가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보호를 호소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 역시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힌 아이들을 위해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라도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고자 책도 쓰고,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면 이 관심이 끊어질 것 같아 7년째 소년재판을 전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Q. 일명 ‘천종호법’이라고 하죠.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A. 소년범에게 내리는 처분에는 부모에게 돌아가는 1호부터 소년원 즉 국가가 관리하는 7~10호까지 있습니다. 중간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격리시설로 보내지는데 그 시설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뜻있는 분들을 모아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대안가정, 그룹홈을 제안했고 현재 총 17곳이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민간 후원금

과 제가 쓴 책 두 권의 인세가 운영비의 전부였으니 상황이 어려웠죠.

이러한 실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그룹홈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호소했어요. 작년 5월, 모든 국회 의원에게 저의 두 번째 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와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김명연 의원과 전병헌 의원을 필두로 13명의 의원이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주셨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요.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형 그룹홈이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시설로 인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Q. 기고글을 살펴보니 ‘회복’과 ‘치유’, ‘정의’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판결을 하시면서도 이 단어들을 역시 많이 생각하시나요?

A.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즉 정당하게 배분하고, 배분된 것은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정의는 크게 두 가지, 타인의 몫을 빼앗았을 때 이를 처벌하는 시정적 정의와 각자의 몫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배분적 정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잘못된 사람을 엄벌하는 시정적 정의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시정적 정의에 의해 10호 처분을 받고 2년을 소년원에서 보냈다면, 처벌이 끝난 뒤에는 배분적 정의에 의해 이 아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배분적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환경 개선이 되지 않아 가난의 굴레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마저 없다면 이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결손가정 아이들, 학교 밖을 떠도는 아이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Q. 언론에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A. 저는 언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범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알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인 소년법정을 개방해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재판을 본 모든 분들이 눈물을 쏟고 가셨죠. 그러다 지역의 한 일간지에서 소년재판 이야기를 조그마한 기사로 담아주시면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후 연재를 비롯해 책까지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아이들이 처한 환경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Q. 인터뷰를 준비하며 저희 나름대로 부장님이 하고 계신 일을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의미 부여해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어떠신가요?

A. 한국사회가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입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겠죠. 비행청소년이라는 꼬리표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자산이라 보시고 과감한 투자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진행 양재규(홍보팀장)
정리 및 사진 엄아영(에디터)

디지털 시대의 뉴스 저작권 침해



패러다임이 변했다. 디지털 혁명은 과거 산업혁명이 가져온 충격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과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를 외치는 언론의 선언은 뉴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디지털화, 모바일화 됐기 때문에 나온 위기의식이다. 올드미디어의 소비량, 즉 발행부수나 시청률로 광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이 언론사의 가장 큰 수익이 되는 시절은 저물고 있다. '디지털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뉴스를 생산해야 한다'가 디지털 퍼스트의 요체인 듯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언론 산업에 던지는 중요한 다른 한 편의 함의는 뉴스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과거에도 뉴스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라는 인식은 별로 없었다. 다만 집집마다 구독료를 내고 종이신문을 보았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저작권 신탁단체로 승인받고 저작권 사업을 시작한 2006년 무렵부터가 아닐까 싶다. 불과 10년 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언론업계(그것도 영업부서나 법무팀 정도)나 홍보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면 '뉴스를 돈 주고 봐야 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지인들에게 필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나면 꼭 돌아오는 반응이 이것이다. '포털에 가면 다 공짜로 보는데?'라는 침언과 함께. 그러면 포털은 이미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그것이 제값인지 험값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했다는 둥,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보는 것은 저작권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둥 구구절절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막 썩든 뉴스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 필자는 디지털화가 문화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은 '누구나 손쉽게' 기존 콘텐츠를 복붙(복사하고 붙여넣기)하고, 공유하여(퍼 나르고), 새롭고 기발한 창작물로 만들 수 있게 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 시각에서 본다면 '복제'와 '전송', '2차 저작물의 창작'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여

러 권리의 집합체인데, 그중 중요한 것이 복제권과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디지털 시대가 되자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

아마도 대부분의 뉴스 이용자들은 별 악의 없이 뉴스를 '복제'하고 '전송'할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기술력만 있으면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에서 뉴스를 통째로 긁어가거나(크롤링),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뉴스를 녹화장치를 이용해 녹화해 '저장'해 놓는 일이 쉬워졌다.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업자들도 많다.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다.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는 곳은 열 손가락, 아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뉴스 크롤링은 주로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럴 경우 언론사는 누가 뉴스를 긁어 갔는지 추적할 도리가 없다. 포털 차원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예컨대 '링크'나 '기사 제목', '기사 요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미권에서는 저작권법을 아예 개정하기도 했다. 구글을 상대로 소송도 한다.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언론사에게 불리하게 마무리되고 말기는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저작권 이슈는 전 세계 언론의 숙제임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물론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뉴스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뉴스 소비가 대부분 일어나는 포털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언론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시각을 뒤집으면 디지털 형식의 뉴스는 종이로 존재할 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유통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저작권료가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언론사에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NOW / 2016 부산토론회



“공인의 성범죄혐의 보도, 고소·고발단계에서는 신중해야”

언론중재위, 공인의 성범죄보도 관련 토론회 개최

최근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관련 혐의사실이 보도되어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혐의 또한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아직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피소 사실이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련의 연예인 성폭행 사건으로 비롯된 성범죄혐의보도의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5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역 언론사를 비롯하여 법학계와 언론학계, 여러 공공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훈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부산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가 ‘공인의 성범죄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로 시의성이 높았던 만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인을 성범죄혐의로 고소·고발한 피해자는 많은 사회적 부담감을 견뎌야 하는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성범죄혐의의 경중, 고소·고발 당시 제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명준 부산일보 논설위원

공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공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자체가 보도할 가치가 있다. 공인의 성범죄혐의를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반적인 대중의 호기심도 알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역시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보도할 가치가 있다. 다만 사후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질 경우, 언론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양재규 홍보팀장

공인의 성범죄혐의보도는 피의자로 지목된 공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알권리의 대상인 범죄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성범죄혐의보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내밀영역과 연관되어,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전 고소·고발 단계에서의 혐의보도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성범죄혐의보도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도 자체를 금해야 한다. 또한 언론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범죄보도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창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인의 성범죄관련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도해야 한다.



종합 토론 중에는 김영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공인의 범죄보도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나 수치심의 결여를 가져와 유사범죄행위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사회를 맡은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고액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언론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낳은 위대한 무지크드라마

바그너의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왠지 모를 중압감을 준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많은 사람이 친숙하게 여기며 좋아하는 대중적인 작곡가라기보다는 특정 애호가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특별한 작곡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양 음악이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길목에서 말러, 브루크너, 슈트라우스 외에도 쇤베르크, 알반 베르크까지 무수히 많은 작곡가가 바그너의 음악에 경도됐고 영향을 받았다.

바그너는 큰 이상을 가지고 심오한 음악 철학을 펼쳐나갔고 직접 집필한 예술론을 자신의 음악에 그대로 접목했다. 또 독특한 화성 악법과 반음계 사용, 웅장한 관현악 등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음악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오페라를 바탕으로 무지크드라마(MusikDrama)라는 자신이 명명한 새로운 악극 양식을 창조했다. 바그너는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작곡기법으로 변방에 머물렀던 게르만과 북유럽 신화를 고급 예술의 소재로 끌어올렸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묘하게 자극하는 음악과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긴 천재였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생한 바그너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과 다사다난한 청년기를 거쳐 드레스덴 궁정오페라극장의 지휘자가 되었으나 드레스덴 혁명에 가담한 죄로 스위스로 망명했다. 일찍이 연상의 연극배우 민나와 결혼을 한 바그너는 우선 홀로 취미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부호 오토 베젠돈크와 부인 마틸데를 만나 정착과 함께 음악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경제적 지원

을 받는다. 베젠돈크의 도움으로 그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예술론을 저술에 담았고, 기존 오페라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양식의 무지크드라마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대본 집필과 작곡을 할 수 있었다(문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바그너는 자신의 오페라와 악극 대본 대부분을 직접 썼다).



트리스탄과 이졸데(1916)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작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북유럽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아일랜드 공주 이졸데와 그녀를 호위하는 콘월의 기사 트리스탄의 금지된 사랑을 노래하는 비극이다. 트리스탄은 숙부 미르케왕이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도록 이졸데를 모셔오는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두 남녀는 금지된 약물을 마

시고 격렬한 사랑에 빠져든다. 멈출 줄 모르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결국 왕에게도 알려지고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쓸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게 된다.

바그너는 이 악극을 통해 '이제부터 오페라가 아니라 무지크드라마라고 이름 붙인다'고 직접 밝히며 각각의 등장인물을 음악으로 상징하는 유도 동기, 멈추지 않는 음의 흐름 속에서 드라마가 진행되는 무한선율 등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며 서양 음악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문제는 그가 순수한 예술혼만 불태웠다면 좋았을 것을 인간적으로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바그너는 완성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대본을 마틸데에게 읽어주면서 마음 속에 감춰뒀던 사랑을 고백하고, 이때부터 마틸데를 '나의 여신'이라고 부르며 은인의 부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바그너는 그녀로부터 받은 다섯 편의 시에 음악을 입혀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노래로 만들었다. 이것이 유명한 '베젠돈크 가곡집'에 수록된 '베젠돈크의 노래'이고 마틸데를 향한 이룰 수 없는 사랑과 그의 절망감이 그대로 담겨 빼어난 예술로 남은 것이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인 것이다.

남편 베젠돈크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만 바그너는 그런 인간적 신의보다는 자신의 사랑과 예술의 완성이 훨씬 중요했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고 예술 지상주의자였다. 이후에도 바그너는 종종 그런 종류의 일을 다시 일으키곤 했는데 위대한 예술가의 인성이 예술적 성취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寬容

寬容



지난 8월 프랑스 파리 교외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무슬림 여성 2명이 쫓겨났습니다. 식당 셰프가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고,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며 음식 주문을 받지 않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두 여성은 “우리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며 반박하기도 했지요. 이 광경은 그대로 SNS를 타고 프랑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결국 인종차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셰프는 그의 친구 한 명이 지난해 파리 테러 때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부 사과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와 더불어 프랑스는 물론 유럽 지역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스나 칸 등 일부 지방 도시들은 프랑스 법원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계속 부르키니 착용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내년 프랑스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시민대혁명의 나라이며 특히 톨레랑스(관용)로 상징되는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민과 다문화에 가장 관대한 정책을 폈던 프랑스가 이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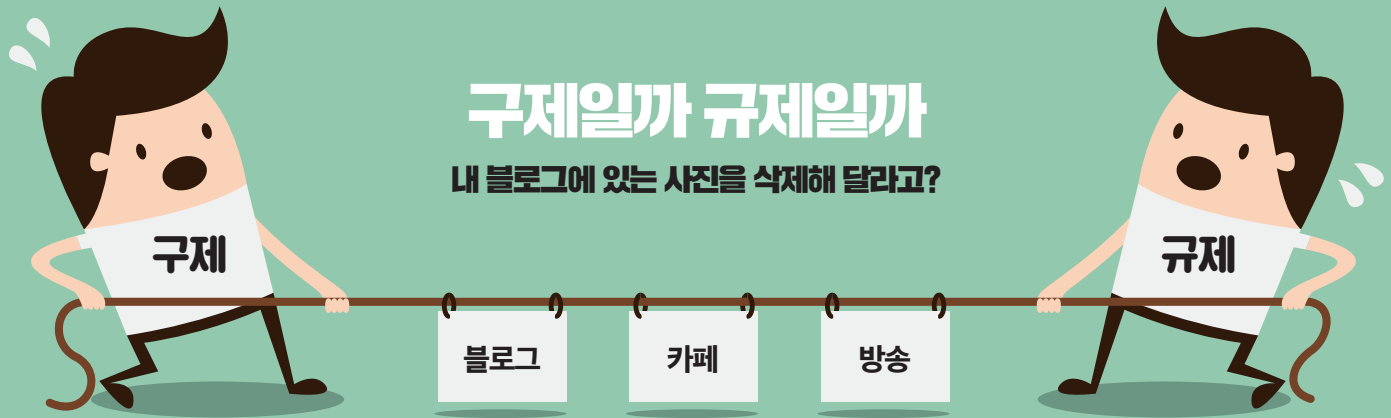
국가(IS)의 테러와 대규모 난민 유입 등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대선 국면의 미국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불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성추문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멕시코 등에서의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 아시아계 확대 등에 심한 불만을 갖고 있는 백인 중산층 이하 남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요. 그들의 불만과 증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이번 대선에 미국의 관용과 배려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슬쩍 역공을 가했습니다. 대서양을 끼고 양쪽 대륙의 서구 문명이 관용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거 맘으로 유명한 석학 에이밍 추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제국의 미래>(Day of Empire, 이순희 역)에서 로마부터 미국까지 역사상 제국으로 불렸던 초강대국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국으로 진화했고 어떻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 것이죠. 그의 결론은 제국은 관용의 정신으로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했으며, 관용의

상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추아 교수가 강조한 관용은 인권과 관련된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질적인 개인·집단이 그 사회에 참여하고 공존하면서 변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원적이고 열린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 책을 썼을 때가 2007년인데, 이 관점에서 미국은 정점을 찍고 막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며, 서구 문명에 관용의 정신이 얹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각종 형태의 차별주의가 선진 문명에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민족주의와 고립주의 등이 맞물리고 세계적인 경제적 저성장과 고령화, 그 결과에 따라 세대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관용의 정신을 더 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21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용의 정신에 대한 토론과 논박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경제적 어려움과 부의 편재(偏在), 이에 따른 차별주의가 지금보다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조금씩 양보하는 게 가장 뛰어난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다. 1. 스마트폰을 꺼낸다 2.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 3. 관심 있는 '실시간 검색어'를 누른다. 블로거 역시 사람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높은 조회 수를 위해 화제의 키워드를 놓치는 법이 없다. 관련 기사를 인용하고, 영상을 캡처하는 등 핫한 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정성껏 담아낸다. 사람들의 궁금증 해소가 곧 '자주 방문하는 블로그'로 등록되는 순간인 것이다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방송된 다음 날, 관련 키워드가 상위 검색어에 머물렀고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블로그와 카페에 화제의 방송 내용이 옮겨졌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 등장한 A 씨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왔다. 섭외 당시 제작진이 설명한 기획의도와 방송 내용이 달라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심리 과정에서 방송사가 다시보기(VOD) 서비스에서 A 씨의 모습을 삭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급한 불씨는 끌 수 있었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A 씨가 등장하는 모습을 캡처해 포스팅 한 수많은 블로그와 카페였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A 씨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A 씨는 조정신청 당시부터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블로그와 카페의 주소를 적어와 해당 글의 삭제를 원했다.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상 잘못된 보도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블로그와 카페는 언론피해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재부가 방송사를 통해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게시물 삭제를 강제하기 어렵고 방송사가 삭제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리 시작 전 A 씨에게 상황의 부득이함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정 제도의 장점 아니겠는가. A 씨에게 방송사에 삭제를 요청해줄 것을 얘기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방송사 또는 블

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혹시 방송사나 운영자가 이러한 요구를 규제로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방송사로부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방송사는 "A 씨가 인터뷰 당시 설명한 기획의도와 방송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니, 해당 영상을 캡처한 각종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에게 방송사의 이름으로 삭제를 요청해 보겠다"며 적극적으로 응한 것이다. 물론 삭제 결정은 블로그와 카페 운영자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삭제 여부까지 조정 내용에 포함할 수 없었지만, A 씨와 방송사 모두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또 하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다. 방송사의 요청 결과, 무려 70%에 달하는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다. 방송사가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흔쾌히 A 씨의 피해구제를 도운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만약 A 씨가 아니라 나였더라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조정 신청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요즘이다. 종종 '규정상 도와드릴 수 없다'는 안내를 해왔는데 이번 사례처럼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면,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야 할 때가 정말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 없다.

다행히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잘못된 기사의 '펌글'에 대해 피해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상대로 게시글의 수정·보완·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사항 중 하나이다.

방송사와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 모두에게 위원회 조정 과정과 결과는 '규제'가 아니었고, A 씨는 더욱 포괄적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이다. '구제일까 규제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규제가 아닌 구제가 가능하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훼손죄를 위한 변호

지난 9월 20일 명예훼손죄 일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에서는 개정안을 ‘표현의 자유 보장법’이라 명명하고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을 말했다더니 처벌을 받으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거짓말이라면 모를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평판을 떨어뜨린다 해도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허용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진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심분 공감한다. 다만, 논의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문제, 다시 말해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을 말한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말 현행 형법은 진실에 부합하는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을까?

개정안 발의에 따라 폐지 논의가 진행될 형법 307조 1항은 다음과 같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 규정을 가리켜 ‘진실유포죄’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혹은 ‘일반 명예훼손죄’라 부른다. 조문에도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적시’의 의미는 이렇다. 이 문구는 명예훼손 문제에서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을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실과 의견은 전혀 다른 문제로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의견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타당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정도의 평가만 가능할 뿐,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이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진실’은 동의어가 아니며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나 ‘허위’가 아니라 ‘의견’, ‘평가’, ‘감정’인 것이다. 형법 307조 1항에서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한 데에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주장의 표명,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흔히 저널리즘의 원칙으로 언급되곤 하는 ‘사실은 엄격하게, 의견은 자유롭게’로 귀결되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을 들어 현행 형법이 진실을 말한 경우까지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 ‘사실’이란 ‘허위’는 물론 ‘진실’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에 진실이 포함된다고 해서 형법 307조 1항이 진실한 표현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장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정 후 위법성 평가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위법성 평가 단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늘 그렇듯이 문제는 규정이 아니라 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관심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진정한 자유의 뿌리를 찾아

필라델피아 · 보스턴 여행



미국 독립기념관인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자유를 향한 미국 독립혁명의 성지

자유, 어떠한 외부의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근대 이후 인류가 추구해온 절대적 가치이며, 현대인의 갈망이 담긴 말이다. 미국 독립혁명기의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자유의 화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는 유명한 모비명을 남겼다. 자유를 향한 절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대가를 요구한다. 역사적으로도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지금도 자유를 얻으려면 각고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자유'라는 말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여행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도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동부 도시들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특

히 필라델피아와 보스턴은 미국의 독립과 자유를 향한 투쟁의 현장으로,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다. 보스턴은 미국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이 발발하고 영국과의 첫 전투가 벌어졌던 도시이며, 필라델피아는 독립전쟁을 지휘하면서 건국이념을 확립하고 헌법을 채택해 혁명을 완수한 도시다. 보스턴이 독립의 씨앗을 뿌렸다면, 필라델피아는 그 결실을 맺은 곳이다.

필라델피아는 인구가 150여만 명으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역사 유적들은 중심부에 밀집해 있어 걸어서 돌아보기에 충분

'보스턴 차 사건'의 주역인 사무엘 아담스 동상과 페넬홀



하다. 도시 한가운데 미국독립역사공원이 있고, 그 안에 독립기념관인 인디펜던스 홀을 비롯해 방문자 센터, 국가헌법 센터, 대통령의 집 등 핵심 유적이 있다. 붉은 벽돌의 인디펜던스 홀은 옛 펜실베이니아 식민지 정부청사로, 미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결정한 1775년 대륙회의가 열린 곳이다. 또한 이듬해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인디펜던스 홀 옆 전시장에 있는 '자유의 종'은 미국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종을 칠 때 갈라진 균열이 그대로 남아 지금도 울림이 전해지는 듯하다.

역사공원과 시가지를 천천히 걸으면 험난했던 독립 이후 경제적 번영과 자유, 풍요를 구가하는 미국의 오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활달한 미국인과 잘 가꾸어진 시가지가 그것을 웅변한다. 필라델피아의 명물 제노(Geno) 스테이크 샌드위치까지 먹어본다면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붉은 선과 벽돌로 이어진 '프리덤 트레일'

보스턴을 돌아보는 데는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즉 '자유의 길' 도보 여행이 필수다. 도로에 빨간 선 또는 빨간 벽돌로 과거 독립혁명의 역사 유적을 연결해놓은 길이다. 총 4km(2.5마일)에 이르는 거리에 모두 16곳의 유적을 연결하고 있다. 보스턴의 센트럴 파크인 보스턴 커먼에서 시작해 구 매사추세츠 주청사, 파크 스트리트 교회, 구 의회 건물, 보스턴 학살현장, 노스 처치를 거쳐 찰스강을 건너 벌쳐힐 기념관까지 이어진다. 역사적인 '차 사건'이 벌어진 보스턴 항구가 빠져 있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보스턴의 역사, 자유를 위한 투쟁의 현장이 거의 모두 들어가 있는 코스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험난한 과정이었다. 1773년 과도한 세금과 동인도회사의 무역 독점에 항의하며 342개의 차상자를 부수고 바다에 빠뜨린 차 사건이 기폭제였다. 이 사건 이후 영국이 군대를 시내에 진주시키고 항구를 봉쇄해 버리자 그때까지 '어머니 나라'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인군 13개 식민지 주는 연합을 결성하고 전쟁에 돌입했다. 1783년 독립을 승인받기까지 8년 동안 9,000여 명의 사망자를 동반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은 '식민지 정착민(Colonist)'이 아니라 '미합중국 국민(American)'이 되었다. 그 핵심 사상이 '자유였고, 건국 이념이 되었다.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 가면 그 역사를 되새길 수 있지만,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영국 전원풍의 아름다운 주택가나 활기가 넘치는 상가, 고풍스런 옛 건물이 남아 있는 구시가지, 이색적인 건물 등에 눈을 빼앗기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샅길로 빠져 이것저것 돌아보고, 차도 한잔 한 다음 다시 붉은 선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 프리덤 트레일이기도 하다.



보스턴의 역사 유적을 연결한 붉은 색의 '프리덤 트레일'

'자유의 길'이 더 이어져야 하는 이유

보스턴은 미국으로선 깊은 역사를 간직한 아름답고 평화롭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다. 다운타운에서 찰스강을 건너 10여 분만 나가면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와 MIT 대학이 있다. 찰스강변은 '보스턴니언'들의 휴식처로 조깅하거나 산책하는 주민들로 평화롭기 그지없다. 젊음이 넘치고 자연과 도시, 주변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시이며,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다문화 도시다. 묘하게 지적 충만감을 느끼게 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함이 남았다. 그 이유는 보스턴 구시가지에 있는 '자유의 나무' 조형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과거 보스턴 시민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토론했던 교차로에 만든 것으로, 그 나무는 '자유'를 상징하며, 뿌리엔 '법과 질서(Law and Order)'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법과 질서를 자양분으로 자유의 나무가 성장하며,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가 그 자양분이라는 것은 다분히 '미국적'이며, '근대적'이다. 오늘날에는 식민지 지배나 신분적 차별, 정치적 억압이 사라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유는 더 위축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사슬,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효율성 위주의 신자유주의, 황금만능주의, 성장과 성공 지상주의가 새로운 굴레로 현대인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과거 산업혁명 전후로 신흥 부르주아들이 이주해 형성한 자유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필라델피아와 보스턴은 물론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최고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뉴욕이나 워싱턴도 마찬가지였다. 자유를 위해선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법의 강제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패권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미국식 자유와 개인주의의 실체였다.

이제 자유의 나무에 평화와 인권 등 미래지향적 가치가 더해져야 한다. '프리덤 트레일'은 더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 생각의 폭을 넓히니, 미국 동부 역사 도시 여행이 더욱 값지게 다가왔다.

COMMISSIONERS 위원동정

• **홍문기 위원, <한-홍콩 소셜미디어 광고 비교사례연구> 심포지엄 발표**
홍문기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10월 3일 홍콩 사틴중문대학교에서 열린 <한-홍콩 소셜미디어 광고 비교사례연구>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증하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추세에 맞추어 한국,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소셜미디어 환경 및 소셜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국광고PR실학회와 홍콩 중문대학교가 공동개최하였다.

• **한은경 위원,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과 광고 전략> 세미나 사회**
한은경 위원(서울제7중재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0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과 광고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MBN-채널A-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3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한 위원은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발표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 송중현 위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송중현 위원(대전중재부,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로써 송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적 관심행사 선정, 중계권 공동계약 권고, 중계방송 순차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김동규 위원,

• <한국 방송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세미나 사회

김동규 위원(서울제8중재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원장)은 10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방송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사회자로 참석했다.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한류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방송 산업의 비극을 넘어서: 문제는 내수시장이다' 등에 대해 논의가 오고갔다.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수단 필요”

위원회가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리서치랩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기사로 인한 인격권,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이 80.3%에 달했으며 이들 가운데 93.8%는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종료

10월 10일 위원회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잘못된 보도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 원 보도와 관련된 각종 게시물에 남아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박용상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에 위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위법한 침해적 복제 기사 및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페이스북

<2016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위원회가 10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올해의 페이스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해럴드경제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고객과 국민 간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제정했다.

제1차 외국언론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10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위원회 강의실에서 외국언론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케냐, 필리핀 등 6개 나라의 언론인이 참석했다.



신청인이 사기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보도, 무혐의 처분을 알리는 추후보도와 블로그에 전제된 기사 삭제로 조정성립

A 방송사는 모 지역 체육단체에서 주관한 대회에 허위선수를 등록해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해당 단체의 단체장인 신청인이 고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재판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또한 원 보도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피해를 호소하였다.

A 방송사는 취재 및 보도 당시에는 정황상 충분

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었고 신청인의 반론도 함께 담아 보도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중재부**는 해당 기사가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 삭제되었음에도 개인 블로그에 옮겨진 기사가 남아 계속 검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신청인 역시 이에 공감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블로그에 옮겨진 기사가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비싼 단가로 자재를 납품해 불량급식을 조장한다는 의혹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B 신문사는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신청인이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이 납품한 제품과 시중가를 비교한 제품은 물량 및 품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정 한 업체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B 신문사는 다른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 보도한 점을 인정하였다.

중재부는 해당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영업상 손해가 예상되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BOOK

책 리뷰



자존감 수업

윤홍균 저.
심플라이프, 2016

진짜 행복을 위한 튼튼한 자존감 만들기

언제부터인가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은 최근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자존감을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전감' 등의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석에 기반하여 경계는 사라졌지만 고립감은 더 심해진 현대 사회에서 자존감이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대인관계 패턴을 분석하여 독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자존감 저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감정인 '창피함', '죄책감', '냉소' 등을 다루기 힘든 감정, 뜨거운 감정, 차가운 감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윤 원장은 글의 끝에서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자존감 역시 식스팩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존감 수업>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아보길 바란다.

제 1 회 언론중재위원회

웹툰 공모전

국민과 언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

언론중재위원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주세요! 재능 있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공모전 개요

공모내역 10컷 내외의 웹툰

공모자격 고등학생 이상의 일반인(개인만 가능, 단체는 제외)

공모주제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하는 콘텐츠
- 일상생활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초상권·음성권·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콘텐츠
- 인터넷 상 기사 복제 및 확산,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콘텐츠

접수방법

접수기간: 2016년 11월 1일(화)~ 21일(월) (3주간)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pac.or.kr>)에서 접수 및 확인
공모주제에 맞는 10컷 내외의 웹툰 완결본을 JPG 파일로 제출

심사 및 시상

결과발표 11월 넷째주,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시상식 11월 마지막주, 수상자 개별 통지

금상 1명

100만원

은상 2명

각 50만원

동상 5명

각 10만원(상품권)